파주시 공고 제2020-2315호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관내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1. 18.

파 주 시 장

1. 사업의 내용

○ 업무내용 : 관내 발생하는 유기동물 구조(포획) 및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후 방사(TNR) 추진

○ 사업기간 : 2021. 1. 1. ~ 2022. 12. 31. (2년간)

○ 사 업 비 : 235,000천원(1,700두)

- 유기동물 : 1,000두(120,000원/두), TNR : 700두(150,000원/두)

※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4를 충족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보호관리 시설 및 인력기준 : 별표 1 참조

4. 보호관리 운영 조건

○ 사업의 범위 : 파주시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 전반

○ 사업운영자는 동물보호법, 경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관한조례,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계약시 정하는 제반규정과 파주시의 지시사항을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함

○ 파주시유기동물보호소에 현재 보호중인 유기동물(전두수)을 인수 관리하여야 함

파주시/ 농축산과/ 김선주/ 2020-11-19 17:43 /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살천됩니다.

○ 사업비는 유기동물보호관리 계약에 따른 보호관리비를 산출기초에 의거 항목별 정산 후 월별 지급

○ 유기동물 년간 보호관리계약 (예상처리)두수보다 실제 포획(인수)관리 두수가 많을 경우 예산 부족시 에도 계약업체는 계약 기간완료시점까지 책임처리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11. 18 ~ 12. 1일까지 (10일)
- 접수기간 : 2020. 11. 18 ~ 12. 1일까지 (10일)
- 접수장소 : 파주시청 농축산과 (☎ 031-940-4597)
- 접수방법 : 방문신청 ·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 · 공휴일 제외)

※ 신청(자격)자에 한하여 유기동물보호관리 계약조건 및 협약서(안) 열람이 가능하며, 접수된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원본 1부, 제본 1부)

1)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1부 : 서식1 참조

2) 동물의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시설사용계약서, 건축물대장, 시설별 사진 등)

3) 인력현황(주민등록등본, 이력서등) 각 1부

2) 유기동물처리 사업계획서 1부

4) 구조(포획)장비 및 운반차량 내역 증빙 서류

※ 동물의 진료를 위탁한 경우(계약서,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5) 동물의 구조·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6) 사업자등록증, 회칙(단체의 경우), 정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6. 업체 선정(심사)방법 및 결정

○ 위탁자의 선정(심사)기준

- 유기동물위탁관리사업 운영 및 수행계획, 보호시설·장비, 인력 보유 상태, 기술능력, 경험, 동물복지 마인드 등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의한 심사평가에 의거 적격자 선정
- 신청자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계획등 심사평가에 의거 순위 선정 (사전 신청업체에 대하여 담당자 현지확인)
-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배점기준 종합점수 최고득점을 받은 업체를 동물보호관리 업체로 선정
- 선정자 협약체결 포기 및 미체결시 차순위자와 순차적 협약 체결

○ 신청자 사업설명 (장소 및 일정은 별도로 개별 통보)

- 사업계획 및 운영 설명 (심사당일 : 업체당 10분 내외)
- 설명에 필요한 서류 및 장비 등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

※ 신청자가 사업설명회 불참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심사결과 : 선정(순위)자 개별통보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어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 후 다른 업체에 재 위탁 할 경우 계약이 취소 됨.

○ 기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약과 관계된 서류는 별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31-940-4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에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illegible] 장치나 [illegible]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illegible]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파주시/ 농축산과/ 김선주/ 2020-11-19 17:43 /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실천됩니다.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은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보수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파주시/ 농축산과/ 김선주/ 2020-11-19 17:43 /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실천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3. 22.>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구조・보호 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PAJU

첨부서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4. 동물의 구조・보호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 시)	→	결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파주시/ 농축산과/ 김선주/ 2020-11-19 17:43 /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실천됩니다.